국가별·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○ '외국인 취업교육기관'의 현행 지정기간이 '19.8.4. 만료 예정임에 따라 지정기간을 새로이 지정하고, 불필요한 내용(지정기관의 대표자)을 삭제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: 해당기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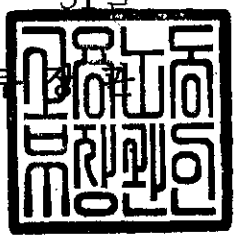
라. 기　　타: 해당사항 없음

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- 44호

「국가별·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9년 7월 31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

국가별·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

Ⅰ. 국가별·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

1. (제조업 등 분야) 취업교육기관

가. 기관명: 노사발전재단

나. 소재지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

다. 지정기간: 2019년 8월 5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

라.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: 제조·서비스업(몽골·베트남·태국·라오스)

2. (제조업 등 분야) 취업교육기관

가. 기관명: 중소기업중앙회

나. 소재지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

다. 지정기간: 2019년 8월 5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

라.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: 제조·서비스업(필리핀·스리랑카·인도네시아·우즈베키스탄·파키스탄·캄보디아·중국·방글라데시·네팔·키르기스스탄·미얀마·동티모르)

3. (농축산업 분야) 취업교육기관

가. 기관명: 농업협동조합중앙회

나. 소재지: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

다. 지정기간: 2019년 8월 5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

라.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: 농축산업(농축산업 송출국가 전체)

4. (어업 분야) 취업교육기관

가. 기관명: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
나. 소재지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

다. 지정기간: 2019년 8월 5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

라.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: 어업(어업 송출국가 전체)

5. (건설업 분야) 취업교육기관

가. 기관명: 대한건설협회

나. 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

다. 지정기간: 2019년 8월 5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

라.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: 건설업(건설업 송출국가 전체)

Ⅱ. 행정사항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2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2021년 8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3. 경과조치

이 고시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취업교육기관은 2019년 8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